# 태화강 유보라 팰라티움(조합원 취소분)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 가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4.11.01. 포함) <u>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u>한 경우, 해당 주택의 <u>순위확인서 발급 및</u>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52-258-7889

주택 유형		해당 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 여부		
민영		·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3.11.01.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울산광역시 1년 미만 계=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ŀ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성	<b>당한제</b>	택지유형	
없음	없음 6개월		없음	미적	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 체결
일정	24.11.01.(금)	24.11.11.(월)	24.11.12(화)	24.11.18.(월)	24.11.21(목)~24.11.22(금)	24.11.29(금).~24.12.01(일)

# 1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2023년 10월 30일 동별사용승인이 완료되어 잔금 완납 후 입주가 가능한 후분양 아파트입니다. 또한 건축물 보존등기는 경료된 상태이나 현재 진행 중인 기반시설공사 완료 및 사용승인 이후 대지권 등기가 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조합원 분양(계약) 취소된 주택을 분양함에 따라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미 시공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등에 대해 변경, 추가, 취소 등을 요구하실 수 없으니 이 점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견본주택 운영이 종료되어 주택형별 샘플하우스를 확인하신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시행자는 대출을 알선하지 않습니다.
- 한국부동산 원 청약 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 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 사항은 사업 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 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 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 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일반	공급
2844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1순위( <b>6개월</b>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소득 또는 자산 기준	-	-

※ 1수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 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 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 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3, 제2조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 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 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 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 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 가목 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 부동산 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 부동산 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 (동점 시 추첨)	주택형별 무작위
		(2순위) 1순위에서 미달한 예비입주자 수만큼 <b>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하여</b> 추첨으로 선정	추첨으로 결정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하여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여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상 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일반공급 잔여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taehwagang-ubora-palatium.com/)에 공 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 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 체류 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 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불인정 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
-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신청 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 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 (단, 작은 주택 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 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 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 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 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 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 민간임대	(	)		C	)	
APT 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 후 재공급(계약취소주택)	(	)		>	(	

# 단지 유의사항

2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1.01.(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 우선 공급 등의 판단 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 등본 기준) 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자매 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서류접수	계약 체결
일 정	24.11.11.(월)	24.11.12(화)	24.11.18.(월)	24.11.21(목)~24.11.22(금)	24.11.29(금).~24.12.01(일)
방 법	■ (PC·모바일) 청약 홈(09:00 ~ 1	17:30)	■ (PC·모바일) 청약 홈	■ 사업 주체 분양사무소	
공립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형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286-1번지 단지내상가 105호)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 해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 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 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 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 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울산광역시 중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 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서는「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추가 선택품목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인지세법」제1조 제2항에 의거 **사업 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 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 ※ 세액은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입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 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022.12.31. 개정된「인지세법」제8조 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단, 부적격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 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6개월

※ 분양권 전매는「주택법 시행령」제73조①항 별표3 규정에 의거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됨.(단, 전매행위 제한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과 - 47867호(2024. 10. 3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286-1번지

■ 공급 규모 : 아파트 지하 7층, 지상 49층 3개동 총 455세대 중 조합원 취소분 3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 시기 : 2023년 10월 30일 동별 사용승인 완료로 계약 체결 및 잔금 완납 후 입주 가능

■ 공급대상

3

단위(m², 세대)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도 대 취		주택공급면적(m²)			기타	-11.01	. 11 - 11		OTHER
주택 관리번호		약식표기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84.8627A	84A	84.8627	27.1920	112.0547	50.2077	162.2624	10.3497	7	7				
	84.9385B	84B	84.9385	27.6699	112.6084	50.2526	162.8610	10.3589	12	12				
2024000643	84.8633C	84C	84.8633	27.8841	112.7474	50.2080	162.9554	10.3498	9	9				
202400045	84.5436D	84D	84.5436	28.3459	112.8895	50.0189	162.9084	10.3108	2	2				
	84.9862E	84E	84.9862	27.6825	112.6687	50.2807	162.9494	10.3648	3	3				
				합 .	 계				33	33				

### ■ 공급금액

단위(세대, 원)

주택형	공급					분양가격		계약금(10%)	잔금(90%)				
· · · · · · · · · · · · · · · · · · ·	세대수	동	충	호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101동	35층	2호	176,371,475	548,628,525	725,000,000	72,500,000	652,500,000				
			7층	1호	158,855,963	494,144,037	653,000,000	65,300,000	587,700,000				
	7세대 102동		12층	1호	160,315,589	498,684,411	659,000,000	65,900,000	593,100,000				
84A		7세대	7세대	7세대	7세대	102	102	13층	1호	160,315,589	498,684,411	659,000,000	65,900,000
		1026	1026	1026	1026	14층	2호	160,315,589	498,684,411	659,000,000	65,900,000	593,100,000	
								18층	2호	161,531,944	502,468,056	664,000,000	66,400,000
			40층	2호	164,451,196	511,548,804	676,000,000	67,600,000	608,400,000				
			17층	3호	159,099,234	494,900,766	654,000,000	65,400,000	588,600,000				
	12세대		22층	4호	160,315,589	498,684,411	659,000,000	65,900,000	593,100,000				
84B		101동	23층	3호	160,315,589	498,684,411	659,000,000	65,900,000	593,100,000				
545	12.1  =	1016	29층	4호	160,315,589	498,684,411	659,000,000	65,900,000	593,100,000				
			35층	3호	162,748,299	506,251,701	669,000,000	66,900,000	602,100,000				
_			38층	3호	162,748,299	506,251,701	669,000,000	66,900,000	602,100,000				

			42층	4호	164,451,196	511,548,804	676,000,000	67,600,000	608,400,000																
			45층	3호	164,451,196	511,548,804	676,000,000	67,600,000	608,400,000																
			16층	4호	153,017,459	475,982,541	629,000,000	62,900,000	566,100,000																
		102동	21층	4호	154,477,085	480,522,915	635,000,000	63,500,000	571,500,000																
		1025	33층	4호	155,450,169	483,549,831	639,000,000	63,900,000	575,100,000																
			37층	4호	155,450,169	483,549,831	639,000,000	63,900,000	575,100,000																
			16층	3호	155,450,169	483,549,831	639,000,000	63,900,000	575,100,000																
					23층	3호	157,153,066	488,846,934	646,000,000	64,600,000	581,400,000														
							25층	3호	157,153,066	488,846,934	646,000,000	64,600,000	581,400,000												
			29층	3호	157,153,066	488,846,934	646,000,000	64,600,000	581,400,000																
84C	9세대	103동	103동	103동	103동	103동	103동	33층	3호	159,099,234	494,900,766	654,000,000	65,400,000	588,600,000											
																			36층	3호	159,099,234	494,900,766	654,000,000	65,400,000	588,600,000
									40층	3호	162,505,028	505,494,972	668,000,000	66,800,000	601,200,000										
			46층	3호	162,505,028	505,494,972	668,000,000	66,800,000	601,200,000																
			48층	3호	162,505,028	505,494,972	668,000,000	66,800,000	601,200,000																
0.45	2 1/11/1	103 E	18층	2호	159,099,234	494,900,766	654,000,000	65,400,000	588,600,000																
84D	2세대	103동	23층	2호	160,315,589	498,684,411	659,000,000	65,900,000	593,100,000																
			12층	1호	160,315,589	498,684,411	659,000,000	65,900,000	593,100,000																
84E	3세대	103동	28층	1호	160,802,131	500,197,869	661,000,000	66,100,000	594,900,000																
			36층	1호	162,748,299	506,251,701	669,000,000	66,900,000	602,100,000																

<sup>※</sup> 주택형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기존에 제작 및 배포된 카탈로그 /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하였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 바랍니다.

<sup>※</sup> 상기 분양가격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sup>※</sup> 분양대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sup>※</sup> 상기 분양가격은 별도계약품목(유상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해당 세대의 선택품목은 최초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한 사항 그대로 승계해야 하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 별도 계약 품목(유상옵션)

동	호수	품목	유상옵션 내용	금액(단위:원, VAT 포함)	제조사
	1703호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거실+침실1	3,800,000	삼성전자
	2204호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거실+침실1	3,800,000	삼성전자
	2303호	시스템 에어컨(공기청정기)	실외기+거실+침실1+침실2+침실3	6,400,000	삼성전자
	2904호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거실+침실1	3,800,000	삼성전자
101동	3502호	시스템 에어컨(공기청정기)	실외기+거실+침실1+침실2+침실3	6,400,000	삼성전자
	3503호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거실+침실1+침실2+침실3	6,400,000	삼성전자
	3803호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거실+침실1+침실2+침실3	6,400,000	삼성전지
	4204호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거실+침실1	3,800,000	삼성전지
-	4503호	시스템 에어컨(공기청정기)	실외기+거실+침실1+침실2+침실3	6,400,000	삼성전지
	701호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거실+침실1	3,800,000	삼성전지
	1201호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거실+침실1+침실3	5,200,000	삼성전지
	1301호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거실+침실1	3,800,000	삼성전지
102동	1402호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거실+침실1	3,800,000	삼성전지
	1604호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거실+침실1	3,800,000	삼성전지
	1802호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거실+침실1	3,800,000	삼성전지
	2104호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거실+침실1	3,800,000	삼성전지
	3304호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거실+침실1	3,800,000	삼성전지
	3704호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거실+침실1	3,800,000	삼성전지
	4002호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거실+침실1	3,800,000	삼성전지
	1201호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거실+침실1+침실2	5,200,000	삼성전지
	1603호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거실+침실1	3,800,000	삼성전지
	1802호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거실+침실1+침실2+침실3	6,400,000	삼성전지
	2302호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거실+침실1+침실2+침실3	6,400,000	삼성전지
	2303호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거실+침실1+침실2+침실3	6,400,000	삼성전지
	2503호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거실+침실1	3,800,000	삼성전지
102 E	2801호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거실+침실1+침실2+침실3	6,400,000	삼성전지
103동	2903호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거실+침실1+침실2+침실3	6,400,000	삼성전지
	3303호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거실+침실1	3,800,000	삼성전지
	3601호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거실+침실1	3,800,000	삼성전지
	3603호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거실+침실1	3,800,000	삼성전지
	4003호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거실+침실1+침실2+침실3+주방	7,800,000	삼성전지
	4603호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거실+침실1	3,800,000	삼성전지
	4803호	시스템 에어컨(공기청정기)	실외기+거실+침실1+침실2+침실3+주방	7,800,000	삼성전지

<sup>※</sup> 본 아파트는 2023년 10월30일 동별사용승인 된 주택으로서, 현재 세대의 상태 기준으로 공급되므로 별도계약품목(유상옵션)의 변경 및 취소, 추가적인 옵션 계약이 불가함.

### ■ 무상제공 옵션 품목

동	호수	품목
	3502호	현관 중문,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김치냉장고, 하이브리드쿡탑, 엔지니어드스톤, 안전방범방충망, 음식물 처리기
101동	3503호	현관 중문
1016	3803호	현관 중문
	4503호	하이브리드 쿡탑
102동	1201호	빌트인 김치냉장고, 하이브리드쿡탑, 엔지니어드스톤, 침실3 붙박이장
	1201호	친환경 도료, 음식물 처리기
	1802호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김치냉장고, 하이브리드쿡탑
103동	2302호	현관 중문, 하이브리드쿡탑, 엔지니어드스톤, 음식물 처리기
1038	2801호	현관 중문,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김치냉장고, 하이브리드쿡탑, 엔지니어드스톤, 단열필름, 침실1 슬라이딩 붙박이장, 침실3 붙박이장
	4003호	침실1 슬라이딩 붙박이장, 침실3 붙박이장
	4803호	현관 중문, 빌트인 김치냉장고, 하이브리드쿡탑, 엔지니어드스톤, 단열 필름, 안전방범 방충망, 나노케어, 친환경도료, 음식물처리기, 침실1 슬라이딩 붙박이장, 침실3 붙박이장

<sup>※</sup> 본 아파트는 2023년 10월30일 동별사용승인 된 주택으로서, 현재 세대의 상태 기준으로 공급되므로 무상제공 옵션 품목의 변경 및 취소, 추가적인 옵션 계약이 불가함.

# 4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자매 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b>청약통장 자격요건</b> 을 갖추어야 합니다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b>6개월</b> 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b>6개월</b> 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부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b>6개월</b> 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г	처야에그이	예치금액 1
	~~~	예시트끝니

П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ı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 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 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해당 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m² 초과 85m² 이하	40%	60%

###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 당첨자 선정방법

가점항목	가점 상한		가점 구분	점수	가점 구분	점수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①무주택기간	3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35		0명	5	4명	25
②부양가족 수			1명	10	5명	30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b>のリスココ</b> 太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③입주자저축	17	본인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가입 기간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 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베구시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 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 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 확인용 순위 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와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 사실 확인서를 사업 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 홈 > 청약 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 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 홈 > 청약소통방 > APT 당첨 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 증빙을 위하여 당첨자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내 용
구 문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내 봉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 관계 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한 명 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 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기족관계증명서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18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18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주자저축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 기간을 산정
가입 기간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 관한 규칙」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②무주택자 우선 공급: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가구 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 물량	무주택가구 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 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 기간 : 가입 기간은 순위 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비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청약신청 및 당첨자발표 안내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 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 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09:00~17:30

5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 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 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로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 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접수 시 필요 서류

	필요 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 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제3자 대리신청 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추가서류	시는 제출 생략)	재외동포는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배우자 포함)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수증을 말함)					
(-11+74 ± B)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재외동포는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수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 **청약 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확인하여 드리는 - 서비스 이용은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 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 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b>이용방법</b> : 청약신청 → APT → 청약 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 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모집공고에 대한 - 세대원 등록방법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 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 홈	- 조회방법 : 청약 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11.18.(월) ~ 2024.11.27(수)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 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4.11.18.(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 여부는 반드시 청약 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와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 일정 및 접수장소

6

구분 대상		접수기간	접수장소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접수	당첨자	24.11.21(목)~24.11.22(금)	분양사무소 (우정지역주택조합)	
	예비입주자	10:00~16:00 (2일간)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286-1번지 단지내상가 105호 (우정동, 태화강 유보라 팰라티움)	

#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서류	유형		발급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	O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 분양사무소 비치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 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0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필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서류	0		인감도장	본인	•인감 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 π	0		주민등록표 등본(전체포함)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0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0		주민등록표 초본(전체포함)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혼인 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출입국사실 증명원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해외 근무자		0	해외 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ul>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li>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li> <li>해외 취업자와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li> <li>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비자 발급내역 /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li> <li>*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li> </ul>
(단신 부임)		0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0	주민등록표 초본(전체포함)	직계 존속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 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0		청약 가점점수 산정 기준표	본인	• 분양사무소 비치
			주민등록표 초본(전체포함)	직계 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
		0	구인등목표 조근(전세포함) 	자녀	•만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
			기즈리게즈머니샤니!\	직계 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상세"로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는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한함)
		0	혼인 관계증명서(상세)	자녀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가점제 당첨자		0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포함(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 홈 > 청약 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 명 선택(청약통장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9.54		0	당첨 사실 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 기간 점수를 포함(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청약 홈 > 청약소통방 > APT 당첨 사실 조회)
		0		배우자 및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기록 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출입국사실 증명원	피부양 직계 존속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기록 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피부양 직계 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부적격 통보를		0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본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등(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받은자		0	당첨 사실 소명서류	본인	•해당 기관의 당첨 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 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0		위임장	본인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본인 외	0		인감증명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 본인 발급용 필수,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모두 제3자로	0		인감도장	본인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간주함)	0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로부터 <del>일이</del>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분양사무소(우정지역주택조합)를 방문하여 아래 계약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자격검증(신청자격, 세대주, 당해 거주요건,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 세대 확인 등)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자격 검증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진행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전검수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이 발생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분양사무소를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합니다.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이 필요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일정기간 거주 증명)이 필요합니다.
-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 추후 구비서류의 추가 및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 일정 및 접수 장소

7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문의전화
당첨자 계약체결	2024.11.29.(금) ~ 2024.12.01.(일) 10:00 ~ 16:00 ( 3일간 )	분양사무소 (우정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286-1번지 단지내상가 105호	052-258-7889 / 052-268-7889

- ※ 순위내 청약신청 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급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전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분양사무소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 아래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서	류유형		발급	
구 분	필수	추가 (해당자)	계약시 구비사항	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본인 계약시	0		계약금 입금 영수증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현장수납 불가
	0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0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본인 발급용)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0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0	자격검증서류		
	0	적격여부 확인용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요청서류		
	0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 분양사무소 비치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본인발급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대리계약 시	0		위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본인 외 모두) 추가사항	0		신분증	계약자	<ul><li>●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li><li>●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li><li>(외국인: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li></ul>

- ※ 상기 모든 제 증명서류는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할 경우,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시 외국인의 구비사항은 공급 신청시 구비사항과 동일함)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본인 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합니다.
- ※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 ※ 추후 계약 구비서류 변경 또는 추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분양대금 ( 계약금, 잔금 )	BNK 경남은행	207-0085-6096-06	코리아신탁(주)

-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별도계약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분양사무소에서 일체의 현금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용카드 결제 불가)
- ※ 분양대금(계약금, 잔금)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 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계약금,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분양사무소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잔금을 납부기한(계약후 90일 이내) 이후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의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습니다.
- ※ 만일, 분양대금을 과오납 할 경우, 사업주체로 환불신청서(분양사무소 비치) 및 구비서류(입금확인증, 통장사본, 신분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환불 예정입니다.
-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 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별도계약품목(유상옵션) 납부 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별도 계약 품목 계약금, 잔금	BNK경남은행	207-0105-8653-09	코리아신탁(주)

- ※ 본 아파트는 2023년 10월30일 동별사용승인 된 주택으로서, 현재 세대의 상태 기준으로 공급되므로 별도계약품목(유상옵션)의 변경 및 취소, 추가적인 옵션 계약이 불가함.
- ※ 별도계약품목(유상옵션) 납부 계좌는 분양대금 납부 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 정당 당첨 계약 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공급계약을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가산세) 및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 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 계약관리(안내, 고지 등)를 위해 계약 체결 시 도로명 주소(행정안전부 안내 참고)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 시 도로명 주소가 명기된 제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종전 지번 기준 주소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배치, 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 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분양사무소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반드시 사업계획 승인도서 및 현장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의 당첨이 확인되거나 또는 불법 전매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일방적인 해약 조치와 함께 처벌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합니다.
-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 관련 예금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합니다.
- ※ 주변단지의 신축이나 증, 개축 또는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소음·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생활환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 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소명 기간이 지난 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 계약 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 계약 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플러스옵션 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별도계약품목(유상옵션)이 설치된 세대는 해제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분양계약서 및 계약구비서류에 준합니다.

#### ■ 자금관리 대리사무 관련 특약사항

- ① 코리아신탁(주)(이하 "자금관리 대리사무사"라 한다)는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수분양자의 중도해지에 의한 환불금 등)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사업주체)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자금관리 대리사무사가 매도인(사업주체)과 체결한 대리사무계약의 조약에 따라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자금관리 대리사무사가 관리하는 분양수입금과 자금 관리업무 모두 매도인(사업주체)에게 포괄승계되며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의 업무는 종결, 면책됨을 확인합니다.
- ③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사업주체)의 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 총액을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위해 분양수입금을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납부하기로 합니다.
- ④ "자금관리 대리사무사" 는 부족한 사업비의 조달에 관여하지 아니합니다.
- ⑤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⑥ "수분양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사"가 본 사업의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 반환 의무는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사업주체)가 부담함을 확인하며, 향후 분양대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의 자금관리계좌 잔액이 분양대금 반환액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한 자금조달 의무는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사업주체)의 책임으로 이행함을 확 인합니다.
- ⑦ 분양대금반환과 관련하여 매수인인 "수분양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분양대금반환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사업주체)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 ⑧ 자금관리대리사무사가 매도인과 체결한 대리사무계약의 조약에 따라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자금관리 대리사무사가 관리하는 분양수입금과 자금관리업무 모두 매도인에게 포괄승계되며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의 업무는 종결, 면책됨을 확인합니다.

### ■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① 사업주체의 대출금이 전액 상환될 경우 코리아신탁(주)와의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은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수납계좌가 변경될 수 있고, "수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 ② 수납계좌가 변경될 경우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서 상의 수분양자 주소로 해당 내용을 우편통지할 예정이며, 우편통지 도달과 관련한 사항은 다툴 수 없음.

#### ■ 입주자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 3항 제 27호

※ 본 아파트는 동별사용승인(23.10.30) 완료되어 즉시 입주가 가능한 준공 후 분양 아파트로 입주자 사전점검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 입주가능일 : 잔금 완납 후 즉시 입주가능

※ 본 아파트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어 잔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전등기 하여야 합니다.

#### ■ 부대복리시설

- ※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 작은도서관, 휘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어린이 놀이터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공동주택관리법」및「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8 참고사항

<b>■</b> 주택소유여!	부 <b>확인방법 및 판정기준</b>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 기타 유의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 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게 즉시 서면(주민등록표등본 포함)통보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권이 감소될 수 있음.
- 본아파트는 탑상형 구조 단지로써 단지 배치상 동별,향별,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에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 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단지내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판매시설(단지내상가) 등 비주거부분은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구할 수 없으며, (아파트부지와 경계분리가 되어 있지 아니함)관리주체 및 주차시설 등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차량 출입구 부분은 주거부분과 비주거(업무시설,판매시설)부분이 공동으로 사용되며, 각 부분별 주차구역은 층별로 상이하오니 분양사무소에서 확인하기 바람.
-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내외 도로와 단지내 비상차로, 차량 진출입구, 비주거(판매시설)등에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이 침해될 수 있음.
- 분양사무소는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분양사무소에 비치 및 설치되었던 평면 설계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분양홍보물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 할 수 있으므로 분양사무소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현장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계약 체결시 분양사무소 비치된 사업승인도면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계약자의 분양사무소 비치 도면 확인의무),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실외기실은 결로방지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 외부 온도 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으로 인한 마감재 손상이 있을 수 있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외국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거주자)은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대출가능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9 단지 여건 등

- ▶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분양사무소에서 설계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건축법」및「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탑상형 구조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지는 아파트, 업무시설(오피스텔), 판매시설이 공존하는 부지로 단지 북측 차량 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하며, 주출입구 부근에는 화물조업주차 2개소, 장애인주차 2개소와 통학차량 등 임시차량을 위한 정차구역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 본 단지내 오피스텔은 103동 지상4층 ~ 지상11층에 배치되어 있으며, 오피스텔 입주자 출입구는 공동주택과 별도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 주차장은 총674대 아파트 523대, 오피스텔49대, 판매시설102대이며, 단지 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치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주차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되었으므로, 향후 관련법개정 및 개인/단체에 의한 추가요구가 불가능합니다.)
- ┃• 지하주차장은 지하1~지하6층 까지 총 6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판매시설 주차장은 지하1층, 오피스텔 주차장은 지하1~지하2층, 아파트 주차장은 지하2층~지하6층입니다.
- ▶• 지하주차장 진입로 높이는 2.3m로 설치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 차로 폭은 일방향 구간 3.5m, 양방향 구간 6.0m~7.8m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 단지 배치 상 공동주택/오피스텔/판매시설의 주차구획이 명확히 나누어져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당해 단지에는 기계식주차 14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오피스텔 전용 주차장으로 운영되오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자동차법과 관련하여 판매시설 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1개소 설치되오며, 입주자가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주변도로(북측 당산4길, 동측 당산3길, 서측 명륜로, 남측 강북로) 인접 등으로 일부 동에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학교, 도로, 하수, 가스,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서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주변단지, 인접부지(제척부지) 및 각종 기반시설(도로, 학교, 공공시설, 녹지 등) 및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 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 으며, 인접 세대는 조망권 및 일조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기되지 않은 단지 인근 유해시설 여부는 청약 및 계약 시 분양사무소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리플렛,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 (도로, 공공용지 등)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 가 또는 해당 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 부대복리시설, 조경식재 및 시설물 규모, 용도 및 디자인은 외부 휴게시설 및 선큰 공간은 모든 사용자를 위한 공동사용 공간임을 확인합니다.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공간만 제공되며,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피트니스클럽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인계하기 전까

지 위탁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이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합니다.
- PD. EPS. TPS실 등 내측 벽체 및 바닥은 별도의 마감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 시설별 주차계획 구분은 입주 후 관리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되는 트렌치는 일부 부위에서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바닥은 별도의 구배 계획이 없으므로 일부 부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경로당 및 판매시설 등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실내 및 실외,지붕등에 설치)로 인해 인접 동/세대의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공동주택, 판매시설의 정화조 배기 및 판매시설의 주방배기 시설에 의해 악취가 날 수 있습니다.
- ┃• 오피스텔, 판매시설과 공동주택 주차장의 출입구를 같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용시 일부 동선이 중복되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판매시설 실외기실 공간에는 실외기 설치에 따라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한 동/세대의 경우 불편을 느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엘리베이터 홀은 각세대간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의 설치유무 및 창호크기 . 또는 창 위치는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보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CCTV에 의거하여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념 바랍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집기류(마감재 포함)는 동등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 입점업체는 미확정이며 입점업종(식당,관림집회시설 등)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판매시설 실외기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부 주변 저층부 세대는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 본 아파트는 소방성능위주설계 심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지상26층에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 본 아파트는 소방성능위주설계 심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저층부 일부세대에는 비상용 진입창이 설치되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계단 및 복도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분양카탈로그 및 분양사무소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일부 고정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단위세대 내 안방 비확장 발코니 구간에는 하향식 피난구 설치되어 있습니다.
-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대피공간, 실외기실,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 세대내 실사용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세탁실과 실외기실 공간을 최소면적으로 계획함에 따라 출입문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설치공간의 크기는 그 설치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공간에 설치 될 수 없으니, 청약 및 계약전 현장 방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 바람.
- 건조기의 경우 크기 설치형태 (드럼세탁기 상단 설치형,세탁건조기 일체형 등)에 따라 설치가 불가 할 수 있으며, 환기 및 채광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 미시공됨.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됨.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은 타입별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분양가 등이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계단실에 인접한 침실 등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위세대는 대칭형세대가 있어 거실, 안방, 침실, 부엌의 방향이 상이하게 설치되니 현관 앞에 설치되는 계단 및 E/V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람.
- ▶ 욕실에 바닥난방이 적용되며 샤워실, 욕조 하부에는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 세대 평면 구조에 따라 실외기실이나 후면발코니, 팬트리 내에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가 설치됨.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으로 세대 내에 보일러가 설치됨.
- ▶• 세대 디딤석 및 주방상판은 자재 특성상 시공 이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와 무관함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10mm) 있을 수 있으나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함.
- ┃• 현관 신발장, 복도장, 주방가구 각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세대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세대내 실외기실 바닥은 에폭시 코팅으로 시공되고 별도의 드레인이 없으며, 타입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하며, 실외기의 냉매배관 연결부위 온도차에 의한 결로수 발생은 하자가 아니며, 실외기 가동 효율성을 위해 에어컨 사용 시 실외기실 갤러리창을 개방 후 사용하시기 바람.
- 주방 및 욕실의 환기시설을 통해 인접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음.
- ┃• 당해 아파트에는 유보라 IOT 시스템이 적용되며, 계약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0 기타사항

###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및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

	의무사항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때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의 단열재 설치는 비난방공간과 면하는 난방공간의 외벽을 단열 조치하여야 한다.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 " " " " " ,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라야 한다.
기계부문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라야 한다.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가정용보일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117 - 1113 - 1112 - 1113 - 1113 - 1113 - 1113 - 1113 - 1113 - 1113 - 1113 - 1113 - 1113 - 1113 - 1113 - 1113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지에 관한 규정」,「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설비로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기부문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세/포세3용제3포)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감리회사명	감리금액(원)	비고
 건축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2,653,200,000	
전기	㈜럭키기술단	1,000,000,000	부가세 포함
소방 /통신	㈜나라세이프티	1,100,000,000	

### ■ 사업 주체와 시공회사

구 분	사 업 주 체	시 공 사	비고
· 상 호	우정지역주택조합	주식회사 반도건설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 당산3길 20. 2층(우정동)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12, 11층(역삼동)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132-82-92235	180111-0624311	

- 분양사무소 :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286-1번지 태화강 유보라 팰라티움 단지 상가 105호
- 분양문의 : 052-258-7889 / 052-268-7889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분양사무소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람.
- ※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